

1. 제정 이유

「미술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568호, 2023. 7. 25. 제정, 2024. 7. 26.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6항제4호의 위임을 받아 미술품 감정업자가 발급해야 하는 감정서 양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정서의 종류를 두 가지(진위감정, 가격감정)로 구분함(안 제2조)

나. 감정서의 양식 및 기재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술진흥법」 제15조제6항제4호에 따른 감정서 양식 및 기재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술품 감정업자”란 「미술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미술품 감정업을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2. “진위감정서”란 미술품 감정업자가 미술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가격감정서”란 미술품 감정업자가 미술품의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의미와 수준에 대한 견해를 경제적 수치로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진위감정서의 양식 및 기재사항) ① 미술품 감정업자가 발급하는 진위감정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② 진위감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작품의 기본정보
 - 가. 작가명
 - 나. 작품명
 - 다. 제작연도
 - 라. 매체 및 기법(판화 등 복수 제작이 가능한 경우 에디션 번호 추가)
 - 마. 작품규격
 - 바. 작품 이미지
2. 그 밖에 작품 내 서명의 위치와 형태, 작품의 보존 상태나 수리 이력, 작품의 독특한 특징 등 작품을 특정하는 세부사항
3. 감정의 근거
4.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 감정의 결과
5. 발행일자
6. 감정인의 성명, 소속

7. 발행주체의 명칭 및 서명·날인

8. 발행주체의 주소 및 연락처

9. 문서의 고유번호

③ 제2항제6호의 감정인의 정보를 감정서에 기재함이 부적절할 경우, 감정에 참여한 감정인의 명단을 별도로 보관·관리하는 것으로 그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진위감정의 근거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감정인의 판단에 따라 일부만 기술할 수 있다.

1. 감정의 작업 범위

2. 감정의 방법

3. 작품에 대한 조사 내용

4. 작가에 대한 조사 내용

5. 특기 사항 및 참조 의견

제4조(가격감정서의 양식 및 기재사항) ① 미술품 감정업자가 발급하는 가격감정서의 양식은 별지 제2호와 같다.

② 가격감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작품의 기본정보

가. 작가명

나. 작품명

다. 제작연도

라. 매체 및 기법(판화 등 복수 제작이 가능한 경우 에디션 번호 추가)

마. 작품규격

바. 작품 이미지

2. 그 밖에 작품 내 서명의 위치와 형태, 작품의 보존 상태나 수리 이력, 작품의 독특한 특징 등 작품을 특정하는 세부사항

3. 감정의 기준시점

4. 감정의 목적

5. 감정의 근거

6. 미술품 가치에 대한 경제적 수치를 포함한 감정의 결과

7. 감정인의 성명, 소속, 감정 관련 이력 사항, 감정 대상 작품과 관련된 특

수관계 여부 등 정보

8. 발행일자

9. 발행주체의 명칭 및 서명·날인

10. 발행주체의 주소 및 연락처

11. 문서의 고유번호

③ 가격감정의 근거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감정인의 판단에 따라 일부만 기술할 수 있다.

1. 감정의 작업 범위

2. 가치 평가 방법

3. 시장 분석 결과

4. 작품에 대한 조사 내용

5. 작가에 대한 조사 내용

6. 특기 사항 및 참조 의견

④ 제2항제7호의 특수관계 여부는 감정 대상 작품과 관련하여 가격감정서 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감정인이 해당 작품을 판매위탁, 전시, 컨설팅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말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위감정서 양식

고유번호: (발급주체명) 2026-000000

1. 작품 이미지

2. 작품정보

작가명	
작품명	
제작연도	
매체 및 기법	(판화 등 복수 제작이 가능한 경우 에디션 번호 포함)
작품규격	(단위는 센티미터, 평면 작업은 세로, 가로 순서로, 입체 작업은 높이, 폭, 깊이 순서로 기재)

3. 감정결과

(감정결과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할 것)

4. 감정인

성명	소속	서명

*감정인이 3인을 초과하는 경우 감정서 뒷면에 별도로 첨부

본 감정서는 「미술진흥법」 제15조제6항제4호에 따라 발급하며
감정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감정하였습니다.

년 월 일

감정업자(단체) _____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정업자(단체)의 주소 및 연락처

5. 기타 참고자료

1) 작품 관련 세부사항

(작품 내 서명 위치와 형태, 작품의 보존 상태나 수리 이력,
작품의 독특한 특징 등 작품을 특정하는 사항)

2) 감정의 근거

[] 감정의 작업 범위 [] 감정 방법 [] 작품에 대한 조사 내용 [] 작가에 대한 조사
내용 [] 특기 사항 및 참조 의견 등을 감정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가격감정서 양식

고유번호: (발급주체명) 2026-000000

1. 작품 이미지

2. 작품정보

작가명	
작품명	
제작연도	
매체 및 기법	(판화 등 복수 제작이 가능한 경우 에디션 번호 포함)
작품규격	(단위는 센티미터, 평면 작업은 세로, 가로 순서로, 입체 작업은 높이, 폭, 깊이 순서로 기재)

3. 감정의 기준 시점 :

4. 감정의 목적 및 근거

1) 감정의 목적

☐ 매매 ☐ 청산 ☐ 보험 ☐ 기증 ☐ 세무(상속·증여 등) ☐ 회계처리
☐ 기타 ()

2) 감정의 근거

☐ 감정의 작업 범위 ☐ 가치 평가 방법 ☐ 시장 분석 결과 ☐ 작품에 대한 조사 내용
☐ 작가에 대한 조사 내용 ☐ 특기 사항 및 참조 의견 등을 감정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4. 감정결과

(감정결과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작품의 가치에 대한 경제적 수치를 포함할 것)

5. 감정인

성명	소속	서명

*감정인이 3인을 초과하는 경우 감정서 뒷면에 별도로 첨부

본 감정서는 「미술진흥법」 제15조제6항제4호에 따라 발급하며
 감정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감정하였습니다.

년 월 일

감정업자(단체) _____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정업자(단체)의 주소 및 연락처

6. 기타 참고자료

1) 작품 관련 세부사항

(작품 내 서명 위치와 형태, 작품의 보존 상태나 수리 이력,
작품의 독특한 특징 등 작품을 특정하는 사항)

2) 감정인의 세부정보

감정 관련 이력 사항	(첨부서류로 이력서, 자격증빙서류 등 제출 가능)
특수관계 여부	(감정 대상 작품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작품의 판매위탁, 전시, 컨설팅 등 특수관계가 있었는지 여부)